

## 미국 시민권자 및 국적자에 대한 Medi-Cal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요건에 대한 변경 사항

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,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대부분의 **Medi-Cal** 수혜자는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법이 귀하나 귀하의 가족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정보를 읽으십시오.

**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가 아닌 수혜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**

### **Medi-Cal 신청인 –**

완전한 **Medi-Cal** 에 대한 자격을 얻으려면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지금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 신청하고 나중에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.

적절한 기간 내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한적인 혜택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제한적인 혜택에는 응급 서비스, 임신 관련 서비스, 장기 간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.

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제한된 **Medi-Cal** 혜택이 신청일로 소급하여 완전한 **Medi-Cal** 혜택으로 변경됩니다.

**중요!** 완전한 **Medi-Cal** 혜택은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공되지 않습니다.

### **Medi-Cal 수혜자 –**

연례 자격 재심사(Annual Redetermination) 양식을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 지금 시민권 증명서나 신원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자격 심사 담당 직원에게 증명서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. 서류를 제출할 적절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증명서는 제출할 수 없으나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완전한 **Medi-Cal** 혜택이 제한된 혜택으로 변경됩니다. 이것은 응급, 임신, 장기 간호 서비스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자격 재심사를 받은 달로부터 1년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하면 **Medi-Cal** 혜택이 제한 혜택이 시작된 달로 소급하여 완전한 혜택으로 변경됩니다.

**중요!**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, 또한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하는 한 계속 완전한 **Medi-Cal**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**미국 국적자 –**

미국 국적자에는 미국령 사모아(스웨인즈 아일랜드 포함)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출신의 특정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.

### **비-미국 시민권자 –**

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.

**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를 입수하는 동안 일반 치료비나 치과 치료비를 지불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?**

**Medi-Cal** 이 그러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할 수 있습니다. **(916) 403-2007** 로 보건 서비스부 (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)의 수혜자 서비스(Beneficiary Services)에 전화하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.

## 인정되는 시민권 및 신원 증명 서류

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한 번에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래의 서류 중 **한가지**를 제출하는 것입니다.

- 제한 조건이 없이 발급된 미국 여권(유효 기간이 만료된 여권도 인정)
- 귀화 증명서(N-550 또는 N-570)
- 미국 시민권 증명서(N-560 또는 N-561)

### - 또는 -

위와 같은 서류가 한 가지도 없으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십시오.

####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시민권 증명 서류 중 한 가지

- ❖ 미국 출생 증명서
- ❖ 출생 신고 증명서(DS-1350)
- ❖ 미국 시민권자의 해외 출생 신고서(FS-240)
- ❖ 미국 국무부 출생 증명서(FS-545 또는 DS-1350)
- ❖ 미국 시민권자 신분증(I-197 또는 I-179)
- ❖ 아메리칸 인디언 신분증(I-872)
- ❖ 북마리아나 제도 주민 신분증(I-873)
-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최종 입양 판결문
- ❖ 미국 외 지역에서 출생했고 미국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/신체적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한 입양 증명서(IR-3 또는 IR-4)
- ❖ 1976년 6월 1일 이전에 발급된 미국 공무원 재직 증명서
-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미군 복무 기록
- ❖ 출생 시 작성된 미국 병원 기록 \*†
- ❖ 생명보험, 건강보험 또는 기타 보험 기록 \*†
- ❖ 미국 내 출생지와 출생일 또는 연령이 표시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미국에서 작성된 종교 기록
- ❖ 미국 내 출생지, 입학일, 출생일, 부모의 이름과 출생지가 표시된 초기 학교 기록
- ❖ 신청인의 연령과 미국 시민권 또는 출생지가 표시된 연방이나 주의 인구조사 기록

- ❖ 세네카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\*†
- ❖ 인디언 업무국(Bureau of Indian Affairs)의 나바호 인디언 부족 인구조사 기록 \*†
- ❖ 미국 각 주의 인구 동태 통계국에 등록된 출생 통지서 \*†
- ❖ 자연 미국 공공 출생 기록(출생 후 5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기록) \*†
- ❖ 출산을 담당한 의사 또는 조산사가 서명한 진술서 \*†
- ❖ 인디언 업무국(Bureau of Indian Affairs)의 알래스카 원주민 명부 \*†
- ❖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된 간호 또는 전문 보호 시설(skilled care facility)이나 기타 기관의 입원 서류 \*
- ❖ 의료 기록(예방접종 기록은 제외) \*†

\* 최초 Medi-Cal 신청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전의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미국 내 출생지가 표시되어야 합니다.

†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서류는 출생과 가까운 시점에서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.

가능한 한 리스트의 위쪽에 있는 서류를 **제출해야 합니다**.  
 위와 같은 시민권 증명 서류를 제출할 수 **없는** 경우:  
**2명**의 성인에게 시민권 진술서(Affidavit of Citizenship)를 작성 및 서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. 이러한 성인들은 모두 자신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대한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, 그 중 1명만이 친척이면 됩니다.

### - 그리고 -

#### 아래의 리스트에 포함된 신원 증명 서류 중 한 가지

- ❖ 미국의 주 또는 영토에서 발급되었고 사진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다른 정보가 들어있는 운전면허증
- ❖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
- ❖ 미군 신분증 또는 징병 기록
- ❖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신원 정보가 들어있는 연방, 주, 지방 정부 신분증
- ❖ 미군 부양 가족 신분증
- ❖ 미국 여권(제한 조건이 있는 여권)
- ❖ 인디언 혈통 정도 증명서 또는 기타 미국 아메리칸 인디언/알래스카 원주민 부족 증명 서류
- ❖ 미국 해안경비대 상선 선원 신분증
- ❖ 직원 신분증,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대학 학위증, 결혼 증명서, 이혼 확인서, 재산 양도/소유 증서와 같은 3건 이상의 확인 서류
- ❖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클리닉, 의사 또는 병원의 기록
- ❖ 1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학교, 유아원 또는 보육원의 기록(성적표 포함). 카운티는 이러한 기록을 교육기관에 확인합니다.

- ❖ 요양소 거주 장애인에 대한 요양소 책임자 또는 관리자가 서명한 진술서
- 시민권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**16세 미만의 자녀**에 대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❖ 자녀의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자녀의 신원 진술서
  - ❖ 자녀의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했고 출생지와 출생일이 표시된 Medi-Cal 신청서 또는 Healthy Families/Medi-Cal 통합 신청서
- 18세 미만의 자녀**가 학생증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, 보호자 또는 자녀를 돌보는 친척이 서명한 자녀의 신원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주: 유효 기간이 만료된 신원 서류도 신원 증명서로 인정됩니다.